

미국인과 동물보호법

장칠봉(재미한인수의사)



□ 국인이 동물을 대하는 자세와 한국인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다. 나는 이 다른 점은 의식차이로 본다.

한국의 이름있는 동화 작가가 개를 키우고 헤어지고 또 그리워하는 사연을 담은 이야기를 어떤 동화집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그는 개를 키우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어 개를 옛날 집 주위에다 버리고 갔다.

그러나 그 개는 그날부터 주인이 옛날 출퇴근 시 이용하던 시골역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시간 맞추어 주인을 기다렸지만 주인은 개를 열차안에서만 바라볼 뿐 그냥 지나쳤다.

많은 날이 지나 그 개는 병들어 죽었는지 다시는 역에 나타나지 않았다란 이야기이었다.

작가는 주인을 기다리는 개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어린이에게 감동을 주는 문구로 글을 썼지만 개를 버리고 그래서 개가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전혀 죄스러운 의식이 없었다.

몇년 전 한국신문기사에 난 내용인데, 영동고속 도로변 어디에선가 비틀거리는 맷돼지를 보고, 자가용 타고 지나던 사람도, 버스를 타고 가던 사람도, 모두 내려 돌을 던져 돼지를 추격해서 잡았다.

돼지를 잡고 보니 돌을 던진이가 너무 많아 소유권 문제로 시비가 일었다.

시비끝에 경찰서에 가서 누가 과연 돼지를 가질 수 있을지 가리려 했지만 쉽지 않아 결국 상부기관에 의뢰했다고 했다.

내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한국에도 동물보호 법이 있는데 돌을 던져 돼지에게 고통을 준 이들을 징벌했다는 얘기가 없었다.

한달전 LA근교 한인 펫샵주인이 애완동물에게 예방주사도 주고 수술(?)도 해서 경찰에 구금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아래 예는 미국에서는 수의사의료규정에 어긋

나는 일을 해도 형사법인 동물보호법에 적용되어 구속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뉴욕의 검찰 조사관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도 하고 예방주사를 접종한다는 제보를 받고 확증을 잡고자 접근하였다.

조사관은 고양이의 예방주사와 거세수술을 요구하며 \$135을 건넸다.

그 사람이 돈을 받자 조사관이 그를 체포하였다.

그 사람이 과거에 동물병원에서 일할 때 어깨너머로 고양이 거세수술 같은 몇가지 간단한 수술 방법을 익혔다.

그러나 마취약을 구할 수 없기에 마취를 하지 않고 몇차례 수술을 하였던 것 같다.

결국 그 사람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었고 무면허로 동물을 치료했기에 동물학대죄와 수의사의료법 위반죄로 4년 징역을 언도 받았다.

미국대통령 부시는 지난 5월 3일 '동물싸움금지시행령'에 서명하였다.

앞으로는 동물에게 싸움을 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거나 조장해서 동물이 싸움을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는 3년이하의 감옥살이와 25만불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싸움(전쟁)도 많이 하고 육식도 많이 하는 미국인들이 동물보호 운운 하며 동물학대죄를 엄격한 잣대로 처벌하는 것을 보면, 개를 견공으로 쥐를 서생원으로 불러주는 한인의 입장에선 어처구니 없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에선 동물보호법이 미국인의 정서상 아주 강하게 다루고 있음을 인식해야 될 것 같다.  **수**

※ 본 원고는 2007년 7월 24일자 미주판 중앙일보 칼럼난에 게재된 재미한인수의사회 장칠봉 회원의 글입니다.

